

1. 개정 이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거짓 작성 시 통보절차 마련(안 제93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자가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항공전문의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나. 교육훈련비 환불 등 조종교육훈련생 보호장치 마련(안 제104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보완

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관리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5조의2)

경량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관리를 위하여 교관 현황 변경 등 교육훈련체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보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의무 강화(안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12킬로그램 초과만 한정되어 있는 조종자격 필요 여부를 용도 구분 없이 250그램 초과부터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조종자격을 취득하도록 보완

마. 무인비행장치 비행구역 완화(안 제308조)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교육목적에 한하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개선

바.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마련(안 제317조의2)

항공기 운용(정비, 부품 등 구매), 항공기 정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출 등 안전투자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향후 2년간의 안전투자 계획 등 안전투자공시의 범위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00. ~ 3. 00.)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 또는 예치 등의 교육훈련비 반환 방법

제104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에 관한 사항(「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7.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

제104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6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장은 공해상(公海上)의 공역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2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계획서를”을 “교육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서를”을 “지정서 및 교육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 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교관현황,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의 변경사항
2.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단

제2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5조의2(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 없는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6. 경량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지 않아 경량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06조제1항제4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비행장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훈련 등) ①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제30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2. 공공분야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제30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비행금지구역내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최대이륙중량 7 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방법 등은 관할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312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7조의2(항공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및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내역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안전투자 내역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경년 항공기 교체를 위한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항공기 구입 또는 임차
다. 항공기 운용(정비 및 수리·개조, 발동기·부품 등 구매 및 임차 등)

라. 항공기·발동기·부품 등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매 및 유지관리

마.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안전정보관리

바.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및 소속 직원의 안전교육

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소방·제설·제빙·방빙 등에 필요한 차량 등 구입

아.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차.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안전투자 실적 및 계획을 공시할 것

가. 과거 2년간 안전투자 실적

나. 해당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다. 향후 2년간 안전투자 계획

3. 그 밖에 안전투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공시할 것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투자 공시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법 제135조제5항 및 영 제26조제10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로 부터 안전투자공시 내역서를 접수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내역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1개월 내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포함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서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항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구축된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나) 중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기장”을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기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

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시간

별표 12 제1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4)

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아.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것

아.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것

아.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것

사.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것

사.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것

별표 12 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8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사.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것

사.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것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2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 뒤쪽 중 “국토교통부(무인비행장치 담당부서)”을 “지방항공청(무인비행장치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6조 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험 가입신고서 등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공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중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보험가입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5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306조제1항제4호가목의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중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 또는 예치 등의 교육</u>

② (생략)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u>훈련비 반환 방법</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항공사업법</u> 」 제30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에 관한 사항(「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7. <u>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u> ----- ----- ----- ----- ----- ----- ⑦ ----- ----- ----- -----
<u><신설></u> 6. (생략) ④ ~ ⑤ (생략) ⑥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새로운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해야 한다.</u> ⑦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훈련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훈련운 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 려는 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u>지방항 공청장</u> -----.
⑧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제7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 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 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훈련운영 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u>지방항공청장</u> ----- ----- ----- ----- ----- ----- -----.
⑨ <u>국토교통부장관</u> 은 법 제48조 제7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 관이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⑨ <u>지방항공청장</u> ----- ----- ----- ----- ----- ----- -----.
1. (생 략) 2.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 경되는 경우 등 <u>국토교통부장 관</u>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1. (현행과 같음) 2. ----- ----- <u>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지방항공청장</u> -----
⑩ (생 략) 제161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①	⑩ (현행과 같음) 제161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 ④ (현행과 같음) <u>⑤ 기장은 공해상(公海上)의 공 역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u> <u>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비행하 여야 한다.</u>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 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7조제 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 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 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u>교육계획서</u> 를 첨부하여 <u>국토 교통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 관의 지정 등) ① ----- ----- ----- ----- ----- ----- ----- ----- ----- ----- <u>교육규정</u> 을 ----- -----.
1. ~ 5. (생 략) 6. <u>교육규정</u>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생 략) ③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 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 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 교육기관 <u>지정서</u> 를 발급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지정서 및 교육규정</u> 을

한다. ④ (생 략) ⑤ <u>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⑥·⑦ (생 략) ⑧ <u>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2. <u>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u> 3. <u>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u> 4. <u>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u>	---. ④ (현행과 같음) ⑤ <u>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u> 1. <u>교관 현황,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의 변경사항</u> 2. <u>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단</u> ⑥·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u>한 경우</u> <u><신 설></u>	<u>제295조의2(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u> 2. <u>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u> 3. <u>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u> 4. <u>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u> 5. <u>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 없는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u> 6. <u>경량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지 않아 경량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u>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 3. (생략) 4. <u>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생략) 5.·6.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자 증명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무인비행장치</u>. ----- -----. 가. ----- ----- ----- ----- <u>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u>----- ----- 나.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훈련 등) ① 법 제1</u>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 ⑧ (생략) <u><신설></u>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①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u>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u> 1. 제30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2. 공공분야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비행금지구역내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최대이륙중량 7 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방법 등은 관할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① ----- ----- ----- ----- ----- ----- -----
--	--	--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③ (생략)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비행승
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7조의2(항공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항공사업법」 제
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
업자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지출 및 투자
(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내역
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안전투자 내역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경년 항공기 교체를 위한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하
기 위한 예비용 항공기 구
입 또는 임차

다. 항공기 운용(정비 및 수
리·개조, 발동기·부품
등 구매 및 임차 등)

라. 항공기·발동기·부품 등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매 및 유지관리

마.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안전정보관리

바.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및
소속 직원의 안전교육

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소방·제설·제빙·방빙
등에 필요한 차량 등 구입

아.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
발

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
보

차.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
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
함된 안전투자 실적 및 계획
을 공시할 것

가. 과거 2년간 안전투자 실

적
나. 해당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다. 향후 2년간 안전투자 계획
3. 그 밖에 안전투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공시할 것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투자 공시 내역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법 제135조제5항 및 영 제26조제10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안전투자 공시 내역을 접수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내역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1개월 내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포함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항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구축된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